

## 오척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및 제33조의 2에 따라 변경 수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8일

김 해 시 장

## 1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 1. 산업단지 개요

####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 관리기관 : 김해시(김해시 김해대로 2401)
- 산업단지 위치 : 김해시 진영읍 하계리 774번지 일원

#### 나. 조성목적

-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 중심의 업종을 유치 및 코로나 19이후 비대면 사업수요 증가에 맞춰 산업단지를 개발·관리함으로써 고용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다. 추진경위

- '11. 7. 14 : 오척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1-101호)
- '12. 3. 2 : 오척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2-38호)
- '12. 12. 20 : 오척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승인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2-195호)
- '13. 7. 2 : 오척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3-111호)
- '13. 9. 12 : 오척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3-166호)
- '13. 12. 5 : 오척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승인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3-229호)
- '13. 12. 12 : 오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김해시 공고 제2013-2374호)
- '19. 6. 14 : 오척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수립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9-140호)
- '20. 12. 31 : 오척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김해시 고시 제2020-415호)

### 라. 분양계획

(단위 : 천㎡)

구 분	총면적	분 양 가 능 면 적					조성 기간	조성 기관
		분 양	미 분 양			계		
			조 성	미조성	소 계			
<b>계</b>	<b>149,256.3</b>	-	-	-	-	-		
산업시설구역	99,794.9	-	-	-	-	-	2011 ~ 2013.12.  (주)삼호테크 외 3개사	
지원시설구역	5,365.3	-	-	-	-			
공공시설구역	18,116.5	-	-	-	-			
녹 지 구 역	25,979.6	-	-	-	-			

## 마. 입주 및 고용계획

입주현황		고용현황(명)	비고
업체수	면적	인원	
12	“	264	

※ 상기 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바. 입지여건

시설명	현 황	확 충 계 획	
		규 모	일정 및 시행자
도로 철도 항공	- 고속도로(진례, 진영IC) 3Km 입지 - 국도 14호선 좌곤 삼거리 4.5Km 입지 - 시도 16·19호선 연접 - 철도 : 진례역에서 5.3Km에 입지	-	-
용수	- 상수도 현황 · 생활용수 203톤/일	-	-
전력	- 공급능력 : 61,320KWh/년	-	-
통신	- 회선수 : 336회선	-	-
환경	- 하계농공단지 내 오수관로에 연결하여 진영하수처리장에서 처리	-	-
기타	- 공원 1개소	-	-

## 2. 관리기본방향

- 지역경제 기반을 육성하고 산업구조변화의 선도적 역할 수행
-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배치, 입주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 전개 및 관리업무의 전문화로 효율성 제고
-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운영

## 3. 관리기본계획

### 가.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 (1) 용도별 구획면적

구분	합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면적(m <sup>2</sup> )	149,256.3	99,794.9	5,365.3	18,116.5	25,979.6
비율(%)	100.0	66.9	3.6	12.1	17.4

####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가) 산업시설구역 (변경)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 제18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입주기업체가 본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자격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
-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참고시설 및 부대시설
- (3)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에너지에 한함)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 추가

##### (나) 지원시설구역

- (1) 「산업집적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하여 본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자격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건축물
- (2) 「산업집적법」제2조제17호 및 제44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다) 공공시설구역

- (1)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조의5에 따른 공공시설 중 도로, 용수공급시설, 하수도 시설 등
- (2)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 제6항의 산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 (라) 녹지구역

-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 (2)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 (3) 용도별구역 평면도 : 별첨 1

## 나. 입주관리 계획

### (1) 입주대상업종

#### (가) 산업시설구역

- 허용업종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2017. 6 시행)에 의한
  - C13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마스크 제조 관련 업종에 한함)
  - C22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4 : 1차 금속 제조업
  - C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C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7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8 : 전기장비 제조업
  -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D35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태양력발전업(D35114)에 한함)
  - H52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위험 물품 보관업(H52104)는 제외)
  - 부동산 임대업(L6811)

※ 부동산임대업은 「산업집적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 허용하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주기업체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9조제3항에 따라 처분신청자(입주기업체)가 추천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양도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단,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과 사전협의[매입금액 및 임대기간 등]를 거쳐야 함]

### (2) 입주자격

#### (가) 산업시설구역 (변경)

- 「산업집적법」제2조제1호 및 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본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단, 건축물-공작물(지붕, 외벽)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변경**
- 입주대상업종 중에서 환경성검토 결과 적합 판정 기업체

#### (나) 지원시설구역

- 「산업집적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단, 건축물-공작물(지붕, 외벽)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산업시설구역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

#### (다) 공공시설구역

- 공공기관
-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단, 건축물-공작물(지붕, 외벽)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라) 녹지구역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산업단지의 미관, 공해저감과 근로자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녹지 및 공원용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

### (3) 입주제한(변경)

- (가) 기반시설(도로, 용수 등) 이용에 애로가 있거나 인근업체 조업 및 주거지역 생활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공해업종은 제한 가능
- (나)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 **변경**
- (다)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 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 (라) 「약취방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관련 [별표2]에 따른 약취배출시설 설치 업체 - **추가**
- (마)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에 따라 수용성 철석유 사용 사업장을 제한함) - **추가**
  -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시설로서 가목 내지 다목의 조건 등에 따른 이행과 같은 고시 부칙 제2조에 따른 시설로서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한대상 시설에서 제외(단, 같은 고시 부칙 제3조에 따른 기한 내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함)
    - ※ 『환경부 고시 제2020-60호,시행·일부개정 2020.4.1.』 참고

**(4) 입주우선순위**

- (가) 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라 입주 업체 유치
- (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성장유망기업
- (다)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을 위한 저공해업종 영위 기업
- (라) 수출 기여도, 신기술 보유, 고부가가치 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 (마) 관리기관은 위 항목을 포함한 입주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우수기업 유치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배치기준**

- (가) 주변 산업단지와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한 생산용지의 합리적인 배치
- (나) 입주대상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립 및 협업화 체계가 가능토록 배치
- (다) 생산, 서비스, 지원기능이 조화된 토지이용체계 구축
- (라) 산업시설구역 내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 업종별 배치구역 준수
  - ※ 태양력 발전업(D35114) 및 부동산 임대업(L6811)은 입주자격 참조
  - ※※ 상기 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 2**

**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1) 설치계획**

(단위 : m<sup>2</sup>)

구 분	면적	비고
지 원 시 설 (오척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에 의함)	5,365.3	

**(2) 운영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은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일반용도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3.가.(2).(나)의 건축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오척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 허용용도 준수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본 관리기본계획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2) 분할 기준 (변경)**

- (가) 산업시설용지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2항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5조 각항에 따른 공장설립 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 면적은 1,650㎡ 이상으로 함
  - 다만, 입주기업이 연접한 산업용지를 매수하여 사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1,650㎡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토지분할 후 잔여면적은 1,650㎡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분할용지(1,650㎡ 미만)는 기존 산업용지와 합필하여야 하며 합필한 산업용지는 1년 이내에 재분할을 할 수 없음(위반 시 입주계약 해지)
  - 필지의 분할은 차량진출입구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추가
- (나) 지원시설, 상업시설, 주거시설, 공공시설용지 - 추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분할 불가

**(3) 환경관리**

- 가)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나)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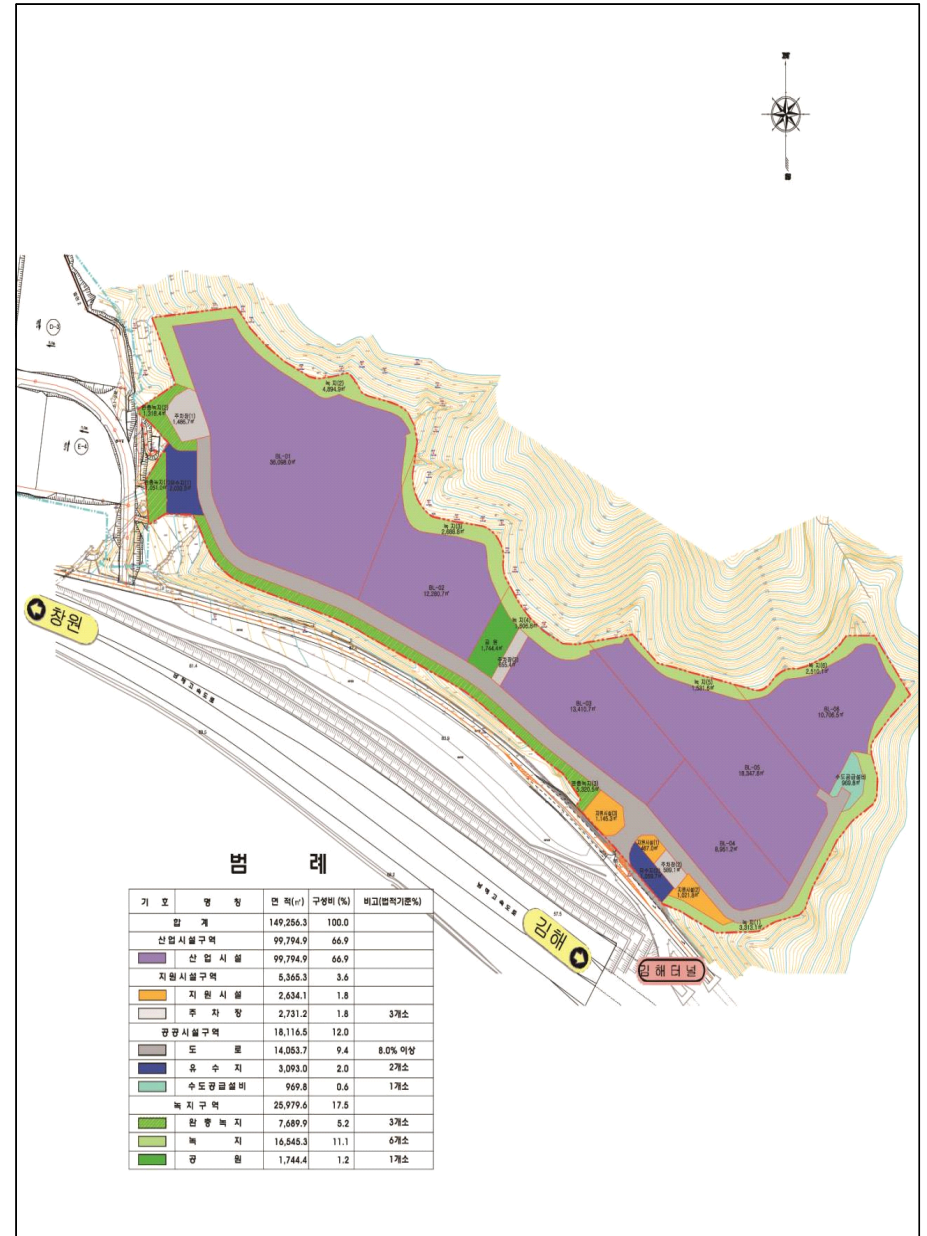
**(4) 안전관리**

- 가) 입주기업은 공장설립 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 나)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관계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 다)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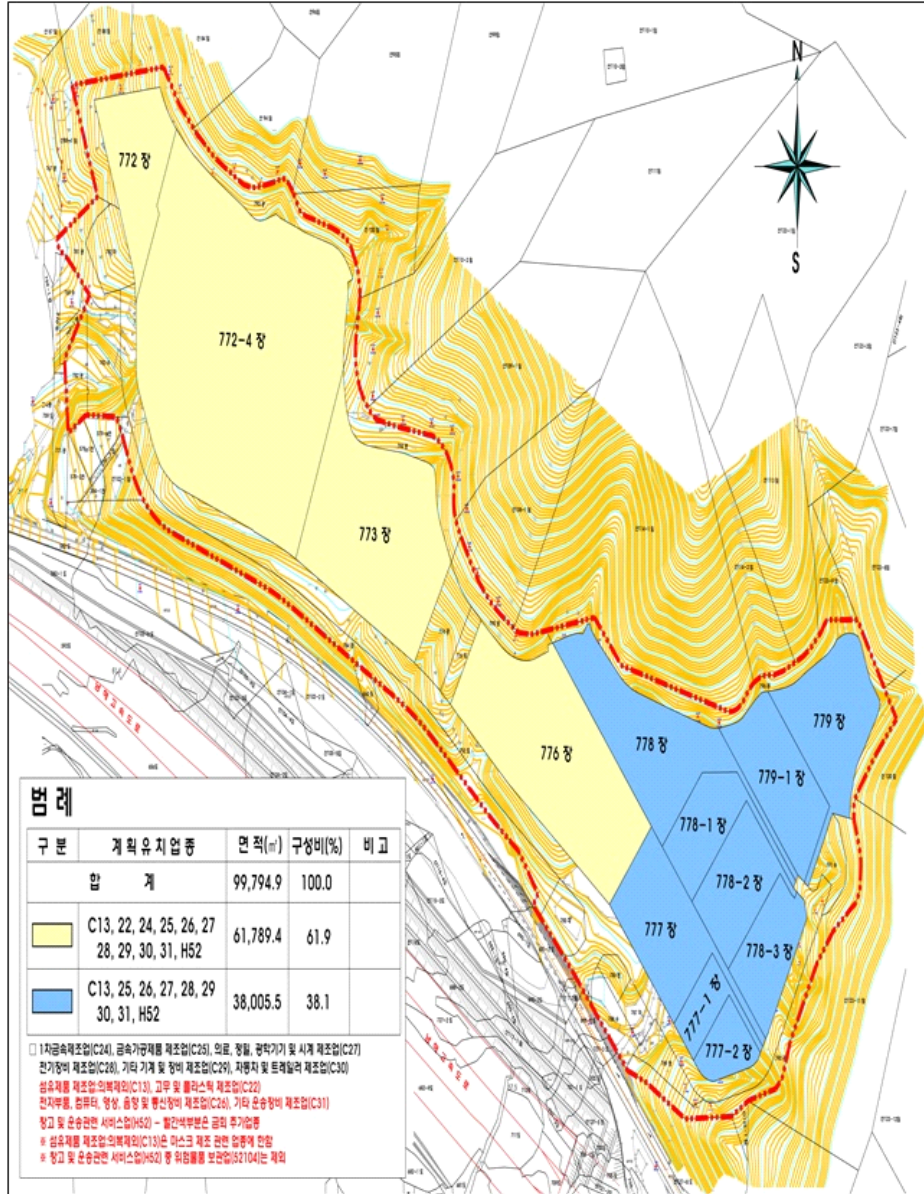
별첨 1 : 용도별 구획평면도

별첨

1. 용도별 구역평면도
2. 업종별 배치계획도



별첨 2 : 업종별 배치계획도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제1장 총 칙
- 제2장 산업시설용지
- 제3장 지원시설용지
- 제4장 기타사항
- 제5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 김해 오척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구단위계획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에 의해 작성되는 김해 오척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구역 내 제1종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 대지의 규모, 용도, 형태와 공간 활동 등에 관한 시행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침의 적용범위)** 본 지침은 김해 오척일반산업단지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한다.

**제3조(지침적용의 구성)** 본 지침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제1장 총칙과 제4장 기타사항, 제5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은 모든 건축용지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제2장은 산업시설용지에, 제3장은 지원시설용지에 각각 적용한다.

### 제4조(지침적용의 기본원칙)

- ① 본 지침은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관련법규 및 김해시 관련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 ② 본 지침 내용 중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 제5조(용어의 정리)

-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용적률”이라 함은 건축법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상부 건축물 연면적(동일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3. “허용용도”라 함은 그 필지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가 지정된 필지에서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4. “불허용도”라 함은 관련법규에서 허용된다 하더라도 해당 필지에는 허용되지 않은 건축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와 불허용도가 중복될 경우 불허용도가 우선적으로 적용 된다.
  5.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되어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6.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7.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 이상, 30% 미만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8. “강조색”이라 함은 건축의 의장효과를 위하여 사용되는 색깔로서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 미만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 ② 본 지침에서의 층수의 산정은 건축법상의 규정을 따른다.
- ③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 제2장 산업시설용지

**제6조(건축물의 용도)** 산업시설용지에서의 용도규제는 다음과 같다. **(변경)**

구 분	규 제 내 용	
용 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업종에 한함) - <b>변경</b></li> <li>○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참고시설 - <b>추가</b></li> <li>○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5호 발전시설(단, 해당 공장건축물 지붕 및 외벽에 한함) - <b>추가</b></li> </ul>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종 - <b>추가</b></li> <li>○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 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 <b>추가</b></li> <li>○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에 따라 수용성 질소유 사용 사업장을 제한함) - <b>변경</b>                      ※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시설로서 가목 내지 다목의 조건 등에 따른 이행과 같은 고시 부칙 제2조에 따른 시설로서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한대상 시설에서 제외(단, 같은 고시 부칙 제3조에 따른 기한 내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함)</li> </ul>

### 제7조(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①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용적률	최고층수	300	20m(처마높이)
건폐율	최저층수	70	-

② 산업시설용지의 건폐율은 70% 이하, 용적률은 300% 이하, 높이는 최고 20m(처마밀) 이하로 적용한다.

**제8조(건축물의 색채)** 건축물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주 조 색	보 조 색	강 조 색
· 무채색 또는 저채색 계통의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색채의 사용을 권장하며, 원색사용을 지양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상 권장	· 제한없음

**제9조(차량의 대지 내 진·출입)**

- ① 완충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곳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단, 비상용 차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도로에서 각 대지의 주차장으로 직접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도의 대지 내의 주차통로를 통해 주차하여야 한다.
- ③ 대지로의 차량 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건상 불합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주차장)**

- ① 산업시설용지 내 개별공장 입지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주차장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의 100% 이상을 확보토록 권장한다.
- ② 산업시설내 대형차량의 주차공간은 1면 이상 확보토록 권장한다.
- ③ 기타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장애인을 위한 계획)** 다중이용시설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김해시 관련조례를 적용한다.

**제3장 지원시설용지**

**제12조(건축물의 용도)** 지원시설용지에서의 용도규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규 제 내 용	
용 도	허용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에 의한 건축물 중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중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는 제외),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군사시설은 불허

**제13조(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①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용적률	최고층수	220	5
건폐율	최저층수	60	-

- ② 지원시설용지의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20% 이하로 적용한다.
- ③ 건축물의 층수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김해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 ① 계단실과 승강기 및 주차장(주차설비 포함)은 보행자전용도로변에 설치할 수 없다. 단 계단실과 승강기 외벽의 50%이상 투시형으로 할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변에 설치할 수 있다.
- ② 건축물의 외벽에 반사율이 낮은 유리의 사용을 권장한다.

**제15조(건축물의 색채)**

① 건축물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주 조 색	보 조 색	강 조 색
· 무채색 또는 저채색 계통의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의 사용을 권장하며, 원색사용을 지양 ·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상 권장	· 제한없음

② 건축물 중 외벽의 70% 이상이 유리로 마감될 경우에는 나머지 벽면색은 제1항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6조(차량의 대지 내 진·출입)**

- ① 완충녹지, 소공원, 저류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곳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단, 비상용 차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도로에서 각 대지의 주차장으로 직접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도의 대지 내의 주차통로를 통해 주차하여야 한다.

**제17조(주차장)** 지원시설용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관련 규정(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장애인을 위한 계획)** 다중이용시설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김해시 관련조례를 적용한다.

## 제4장 기타사항

### 제19조(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 ① 1개 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하며, 가능한 지주형 간판에 집약 설치를 유도한다.
- ② 세로형 간판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이 경우 2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 ③ 돌출간판 및 옥상간판은 가로의 미관을 고려하여 불허한다.
- ④ 기타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설치방법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김해시 조례에 따른다.

### 제20조(가설건축물 및 기타)

- ① 옥상에 설치되는 물탱크 중 기성제품은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 ② 산업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의 옥외광고물은 사용할 수 없으나 부득이 본 지침과 상이하게 적용할 경우 김해시와 협의 후 적용하도록 한다.

**제21조(식재)** 개별공장 입지시 건물의 전면 또는 도로변으로 5%이상의 녹지를 설치.

## 제5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22조(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적용범위)** 지구단위계획지침은 다음 각 호의 행위시 적용된다.

1. 신축건축물 및 신축구조물
2. 재축 건축물 및 구조물
3. 증축 또는 대수선시의 해당부분

### 부 칙

- 본 시행지침은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김해시청(투자유치과)에 두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련도서 게재생략). 끝